

우 100-102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FAX 02-6263-8399 ☎ 02-2151-5085 문의: 조사역 김무현

문서번호 소비자보호 2013-759

발신일자 2013.08.02

수 신 김충자 고객님

제 목 민원에 대한 회신

1. 고객님의 무궁한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 은행을 진심으로 성원하시고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의 큰 신뢰와 따뜻한 사랑에 감사 드리며, 저희 은행에 제기하신 사안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 다 음 -

고객님께서 2013.07.23. 저희 은행 PWM 목동센터를 방문하시어, 본인 명의 예금계좌 조회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우선 고객님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기관으로써, 고객정보열람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 1 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 정당한 열람요청에 대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열람기록은 직원들이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로서 이는 저희 은행 직원들의 로그기록인 바, 요청하신 조회사실에 대한 내용은 제공하기 어려움을 안내 드리오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고객님께서 저희 은행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지우시고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시길 부탁 드리며, 저희 은행에서는 보다 성숙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은 행 장



추심금 청구서
반 송 장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에서 등기우편으로 추심금을 청구하신 것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송합니다.

반 송 사 유

- 반송 내용 : 이인영 대표 외 건
- 등기우편을 통한 추심청구금액 한도 초과
 - ☞ 등기우편추심청구한도 : 추심청구금액 30,000,000원 이하(초과시 직접 방문신청)
 - ☞ 추심청구금액 = 최초 법원청구결정금액 - 청구수령금액
- 대리인 지정
 - ☞ 등기우편 추심금 청구는 위임장에 의한 수임자 지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 추심청구서 당행 서식 미사용
 - 결정문 사본 미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 미제출
 - 인감증명서 원본 미제출
 - 제출서류의 당행인정 유효기간 경과
 - ☞ 인감증명서 : 최근 3개월전,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1개월전 발행분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사본 미제출
 - 통장사본 미제출
 - 기 타 ()
- 기타
 - 추심청구서 기재사항 미흡()
 - 기재사항 오류()
 - 기 타 신한은행에 대한 책임 경영위원의 라는 대응부서 함으로 반송함이다

신한은행 BPR추진부 예금압류반 ☎ 2151-5656

우 100-102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 가 120 FAX6263-8399 ☎2151-5087 문의: 조사역 박성현

문서번호 소비자보호 2013-325

발신일자 2013. 4. 9.

수 신 법률사무소 創 新

제 목 계좌 열람/출력 사실내역 요청서에 대한 회신

1. 귀 사무소에서 발송한 2013.03.29 「계좌 열람/출력 사실내역 요청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회신 내용

귀 사무소에서 요청하신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고객 앞 정보제공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식회사 신한은행
은 행 장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 전화 02-2151-4149 FAX 0505-178-5185 문의안내 박광민

문서번호 감사 2013 - 70

발신일자 2013. 5. 10.

수 신 법률사무소 創新

제 목 「계좌 열람/출력 사실내역 요청서에 대한 거부회신에 따른 감사청구서」에 대한 회신

1. 귀 사무소에서 발송한 2013.04.22 「계좌 열람/출력 사실내역 요청서에 대한 거부회신에 따른 감사청구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감사청구에 대한 회신 내용

귀 사무소에서 당행 감사위원장 앞으로 요청하신 감사청구 관련입니다.

귀 사무소는 이영호 고객 외 10인을 대리하여 민원인들의 계좌 조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권 발동은 은행 업무 관련 법령위반행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의심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청구의 경우 청구의 원인으로 삼은 신문기사의 보도나 본건 관련인의 사직 등은 감사권을 발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식회사 신한은행

감사본부장 권재중



신한은행의 계좌 열람/출력 사실내역 요청에 대한 거부회신에 따른 조사청구서

청구인

1. 이인영
경기도 양평군
2. 박우진
경기도 양평군
3. 박민진
경기도 양평군
4. 박장열
서울 성북구
5. 이용례
서울 성북구
6. 박중석
서울 강남구
7. 박은경

청구내용

1. 위 청구인들은 지난 2013. 3. 29. 신한은행의 사회책임경영위원회 위원장, 준법감시인, 감사본부장, 업무지원센터 센터장, 소비자보호센터 센터장 등에게 청구인들이 신한은행에 개설한 계좌 전부에 대하여 2010년 9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어떤 근거로, 무슨 목적하에, 누가, 언제, 열람 또는 출력하였는지, 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는지를 소상하게 명시하여 그 명세를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전성의 사무실로 보내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신한은행은 2013. 4. 9. 신한은행장 명의로 회신하였는바, 그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고객 앞 정보제공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소비자보호 2013-325)라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한은행에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주요 언론에 의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회피하는 신한은행의 처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주요한 경영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신한은행의 최근의 공언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청구인들의 계좌를 열람/출력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확인하여 주기만 하면 될 터인데도 이조차 회피하는 신한은행의 태도를 접하고 청구인들은 더욱 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4. 한편 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취급방침」 3.“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⑤에 의하면 귀 신한은행금융지주회사는 그룹계열사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및 권리침해 시

에 피해를 구제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5. 이에 위 청구인들은 귀 신한금융지주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신한은행에 개설한 계좌 전부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2010년 9월 1일부터 동월 30일까지 어떤 근거로, 무슨 목적하에, 누가, 언제, 열람 또는 출력하였는지, 그리고 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였는지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변호사 전성에게 알려줄 것을 청구합니다. 청구인들이 청구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 청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사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3. 4. 22.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전 성

첨부: 청구인들의 2013. 3. 29.자 내용증명 우편
(「계좌 열람/출력 사실내역 요청서」)

신한금융지주회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귀중

 신한금융지주회사

100-102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120 18F ☎6360-3076 FAX6360-3188 준법지원팀 변호사 김상훈

문서번호 신한준법 2013 - 3

2013. 5. 16.

수 신 법률사무소 창신 전성 변호사님


참 조

제 목 조사청구서에 대한 회신

1. 귀하께서 송부하신 2013.04.22.자 조사청구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청구서 내용과 같이 당사는 고객정보취급방침과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따르고 있으나, 귀하의 요청 내용과 관련한 신한은행의 업무처리 내용은 위 방침들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임원 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소재광 

준법감시인 박우균 

동화일보 양육용 관련 보도에 대해

(2012.8.28)

1. 보도 내용

2012.8.28 동아일보 1면 등에 '신선사라미 비서실 사건'을 통한 '괴도 유길'의 재발도 보도됨.

2. 의도 분석

- 가. 양자가 동거의 주위에 대한 비판을 위한 취재
- 나.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고지연장을 통한 일종의 사기
- 라. 사외감사 역할에 대한 언론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사실만 유지

3. 보도 내용 사실관계

기재 내용	사실관계	비고
신선사라미 회장이 양회장에 대한 비판을 위한 취재	양회장은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4. 신사장은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2012.8.28 동아일보 1면에 '신선사라미 비서실 사건'을 통한 '괴도 유길'의 재발도 보도됨.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

5. 관련 사항

양회장과 신사장의 합의에 대한 비판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유리하게 인용할 예정